

전기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

자료정리/기획관리팀

□ 추진경위 및 일정

- 전기사업법 개정공포:법률 제5830호('99. 2. 8)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산업자
원부공고 제1999-93호('99. 4. 13)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505호
('99. 8. 6)
- 시행일자:'99. 8. 9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갱신제도를 폐지하도록함(현행 제20조제5항 삭제)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종전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업무나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함(현행 제26조 삭제)

□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는 종전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

[부분 발췌]

현행	개정
제17조(환경관련 협의대상 전기설비 등)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발전설비로서 그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17조(공사계획의 인가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별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생략)	<삭제>
제20조(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 등)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0조(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 등) -----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유효기간</p> <p>6.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p> <p>제21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기한은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25조(준용사업의 설비규모) (생략)</p> <p>제26조(보고) (생략)</p> <p>제27조(권한의 위임 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 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p> <p>1. 발전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법 제17조 및 법 제20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법 제31조·법 제33조 내지 법 제42조·법 제44조·법 제45조 및 법 제73조의 권한</p> <p>2.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p> <p>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공사 계획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 다만,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는 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에 한한다.</p> <p>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의 확인 점검</p> <p>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p>	<p>③-----</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1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p> <p>① (산업자원부령 명칭변경)</p> <p>② -----</p> <p>----- 30일 -----.</p> <p>③ (산업자원부령 명칭변경)</p> <p>④ (산업자원부령 명칭변경)</p> <p><삭제></p> <p><삭제></p> <p>제27조(권한의 위임 위탁) 산업자원부장관 -----</p> <p>-----<단서 삭제></p> <p>1. -----</p> <p>----- 법 제10조·법 제12조·법 제14조·법 제14조의 2·법 제15조·법 제17조·법 제20조 -----</p> <p>----- 법 제34조·법 제35조·법 제37조 내지 법 제40조의3·법 제42조·법 제45조 및 법 제73조의 권한</p> <p>2. -----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에 한한다) 공사계획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p> <p>3.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공사신고의 수리</p> <p>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공사 계획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p> <p>2.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p> <p>3. (생략)</p> <p>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p> <p>③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안전공사에 위탁한다.</u></p> <p>1. 법 제34조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p> <p>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p> <p>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의 수리</p>	<p>② (산업자원부령 명칭변경)</p> <p>1.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의 신고수리</p> <p>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p> <p><삭제></p> <p><삭제></p> <p>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p> <p>-----.</p> <p>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p> <p>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p> <p>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p>
<p>별표 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생략)</p>	<p>별표 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삭제)</p>
<p>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p> <p>1. 자본금(생략)</p> <p>2. 기술인력(생략)</p> <p>3. 사무실면적(생략)</p> <p>4. 장비(생략)</p> <p>5. 등록 및 신고(생략)</p>	<p>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p> <p>1. 자본금(생략)</p> <p>2. 기술인력(생략)</p> <p>3. 사무실면적(삭제)</p> <p>4. 장비(생략)</p> <p>5. 등록 및 신고(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다목(5)란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전”을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으로 한다.</p>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

자료정리/기획관리팀

[부분 발췌]

산업자원부령 제80호(1999. 7. 16) 시행일 : 1999. 7. 16

현행	개정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 등) ①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영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변경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변경 확인신청서에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지정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p> <p>⑤지정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⑥지정단체는 경력수첩의 발급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제2조(공사업 면허의 공고)(생략)</p> <p>제3조(공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p> <p><신설></p> <p>2.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p> <p>3.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 기능계 기술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p> <p>4. 전기공사용 장비명세서</p> <p>5. 사무실의 평면축척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p> <p>6.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서류(제1종 공사업에 한한다)</p> <p>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p> <p><신설></p> <p>③제1항 제5호의 사무실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p>1. 자기소유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p>	<p><삭제></p> <p>제3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p> <p>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p> <p>3.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p> <p>가. 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p> <p>4. 전기공사 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p> <p><삭제></p> <p>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p> <p><삭제></p> <p>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p> <p>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
<p>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p> <p>3. 임대차한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p> <p><u>제4조(면허신청서 등의 서면심사) (생략)</u></p> <p><u>제10조(공사업의 상속신고)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면허증 및 면허수첩 <p><u>③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u>제9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u></p> <p><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각 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계약일 현 	<p><삭 제></p> <p><u>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전기공사 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 기술자 보유현황 입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p><u>③지정 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u>④지정 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u></p>

현행	개정
<p>재를 기준으로 한다)</p> <p>3. 면허증 및 면허수첩</p> <p>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p> <p>5. 전기공사공제조합 의견서(제1종 공사업에 한한다)</p> <p>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양도·양수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 서류(제3조 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p> <p>2. 면허증 및 면허수첩</p> <p>⑤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신설></p>	<p>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한다.</p> <p>1.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p> <p>2.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p> <p>3.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p> <p>4. 공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p>

현행	개정
<p><신설></p>	<p>평가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p> <p>⑤지정 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6월 30일 까지 이를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양도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 시공능력을 평가하며, 이의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 한다.</p> <p>⑥지정 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p> <p>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지정 공사업자단체는 요청받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1조(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유	해 당 법 조 문	부 과 기 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3항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3.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2항제4호	등록취소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때 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바.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고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6. 당해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 준 때 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8.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text{시공능력 평가액} = \text{공사실적 평가액} + \text{경영 평가액} + \text{기술능력 평가액} \pm \text{신인도 평가액}$$

가. 공사실적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공사실적 평가액} = \text{연평균 공사실적액} \times 70/100$$

- 1) 공사실적액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2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본다.
- 2)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3)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4)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5)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실질 자본금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 평가액} = (\text{실질 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 \text{공제조합 출자금액}) \times 50/100$$

- 1) 실질 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전기공사업 이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부채비율 평점} + \text{유동비율 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을 평점} + \text{총자본 회전율 평점})/4$$

- 가) 부채비율 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 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 나) 유동비율 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 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 다) 매출액 순이익을 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매출액 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후 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라) 총자본 회전율 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 총자본 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3)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공제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 평가액} = (\text{전년도 당해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times \text{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합계} + \text{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 \times 30/100$$

- 1) 전년도 당해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은 당해 공사업체의 총기성액을 당해 공사업체에 180일 이

상 중사한 전기공사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합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합계} = \text{등급별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수} \times \text{등급별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가)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는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에 한한다.

나)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2	1.5	1.0	0.5

3)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 에 규정된 비용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text{신인도 평가액} = (\text{공사실적 평가액} + \text{경영 평가액} + \text{기술능력 평가액}) \times \text{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pm 10/100$ 의 범위를 초과한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	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 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① 국가기관	+ 4/100
	② 지방자치단체	+ 3/100
	③ 정부투자기관	+ 2/100
나)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100
다)	공사업 영위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5년 이상 10년 이하인 자	+ 1/100
	②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자	+ 2/100
	③ 15년 이상인 자	+ 3/100
라)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재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① 국가기관	- 3/100
	② 지방자치단체	- 2/100
	③ 정부투자기관	- 1/100
마)	최근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1/100×영업정지기간(월수)
바)	최근 3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7/100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 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① 평가년도의 직전 영업년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 2/100
	② 평가년도의 직전 영업년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 3/100
아)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100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양수 (이 규칙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에 따른 양수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그 등록 또는 양수를 한 공사업자의 당해 연도 및 그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